의안번호	제 577 호
의 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연철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0년 11월 9일

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(연철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7

발의연월일: 2020년 11월 9일

발 의 자 : 연철흠, 김기창, 서동학,

박우양, 전원표, 황규철,

이옥규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북의 경제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(안 제2조)
- 다.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및 경영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- 라. 도유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6조)
- 마.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시행 및 도유림의 보호 관리를 위한 보호관리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 및 제8조)
- 바.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사항 규정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

다. 협 의 :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

라. 조례안 예고 : 2020.10. 29. ~ 2020. 11. 6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경제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도유림" 이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.
- 2. "도유림의 경영"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·육림·임목생산·산림관리 기반시설설치·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·사회·문화·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·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.
- 3. "도유림의 관리"란 도유림의 보전,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) 도는 도유림을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 · 효율적 산림관리
 - 2.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
 - 3.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
 - 4. 도유림의 이용 증진을 통한 충청북도민 삶의 질 향상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제3조에 따른

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도유림경영계획)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종합적·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충청북도 도유림경영계획(이하 "경영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경영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청북도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검토·수립하여야 한다.
- 제7조(공동산림사업)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,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농·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
 - 2.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· 운영
 - 3.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
 - 4.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8조(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)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(이하 "보호관리협약" 이라한다)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따른 보호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.
 - 1.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

- 2. 도벌(盜伐)·남벌(濫伐)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활동
- 3.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등 방제활동
- 4. 산지 정화활동
- 5.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 감시 활동
- 6.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
- 7. 경계표주,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
- 8.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- ②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 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 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임산물은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
- 1. 죽거나 쓰러진 나무
- 2. 자투리 나무·가지
- 3.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
- 4.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
- 제9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,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,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국유림의 경영"이라 함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·육림·임목생산·산림 관리기반시설설치·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 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·사회·문화·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·증 진하는 활동을 말한다.
 - 2. "국유림의 관리"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, 대부·사용허가·교환·매수·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)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 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
 - 2.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
 - 3.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
 - 4.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
 - 5. 공·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
- 제11조(국유림의 보호협약)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(이하 "산림조합"이라 한다), 해당 지역 주민들, 학교, 현지에 소재한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

- (이하 "보호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·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역할 수 있다.
- ②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공동산림사업) ①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,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·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(이하 "공동사업수행자"라 한다)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(이하 "공동산림사업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 - 1. 농 · 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
 - 2. 수목원·자연휴양림·산림욕장, 치유의 숲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·운영
 - 3.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
 - 4.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② ~ ④ 〈생 략〉

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9조(국유림의 보호협약) ①〈생 략〉

- ②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"산불방지·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

- 2.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활동
- 3. 산림병해충의 예찰·구제 등 방제활동
- 4.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와 임도·사방 시설의 보호 및 관리활동
- 5. 그 밖에 자생식물 · 희귀식물 · 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
- ③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죽거나 쓰러진 나무
- 2. 자투리 나무 · 가지
- 3.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
- 4.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·버섯류·열 매류·수액 등의 산림부산물
- ④ ~ ⑥ 〈생 략〉

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- 제1조의2(산림 경영·관리의 기본이념)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·경제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·관리 되어야 한다.
- 제2조의2(산림의 경영·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·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〈생 략〉
- 제13조(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,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.
 - ② ~ ⑦ 〈생 략〉

□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1호
 - 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이 조례안 제정·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어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